

조선왕조의 열성어필 간행 (朝鮮王朝의 列聖御筆 刊行)

李 完 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 머리말

역대로 王의 글씨인 어필(御筆)은 왕실에서부터 민간에까지 비장(秘藏)의 진보(眞寶)로 여겨졌다. 더욱이 유교적 체제(儒敎的 體制)와 이념(理念)이 국가의 기틀과 생활의 근간을 점유하던 조선왕조시대에 있어서 어필의 의미는 어느시대 못지않게 컸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선조들을 추존(追尊)하여 왕실의 위엄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았고, 세종은 한글창제 후 처음으로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짓도록 하여 목조(穆祖)·익조(翼祖)·도조(度祖)·환조(桓祖)·태조(太祖)·태종(太宗)·육조(六祖)의 사적(事蹟)을 송축(頌祝)하며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찬양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역대 왕들의 사적은 물론 그들이 지은 글이나 글씨 그림 등이 귀중히 여겨짐에 따라 국가나 왕실에 전래하는 어필을 비롯하여 민간에 흩어진 왕들의 자취가 수습되곤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승하하면 선왕(先王)의 존호(尊號)를 추상(追上)하고 선대(先代)의 실록(實錄)을 편찬하며 선왕의 글인 어제(御製)를 찬집 간행(纂輯 刊行)하고 어필을 수집 모간(蒐輯 模刊)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시행됨과 아울러 그의 뜻을 기리는 존각(尊閣)이 설치되었다. 이 때 어제(御製) 어필(御筆) 어화(御畫) 등을 비롯한 선왕의 자취들은 엄격한 의식을 통해 존각에 봉안되어 국가의 권위와 선왕의 위엄을 기리는 상징물이 되었다. 또한 이들은 존각 외에도 곳곳의 봉안처(奉安處)에 분봉(分奉)되었으며 반사(頒賜)의 과정을 통해 민간으로 퍼져 열성의 자취를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마치 역대 왕실의 족보인 선원보(璿源譜)를 왕이 즉위할 때마다 중교 보간(重校 補刊)하여 봉안하였던 일과 그 궤(軌)를 같이 할 것이다. 이러한 의례(儀禮)가 반복되면서 역대 왕들의 어제와 어필 등이 집적(集積)되고 이들을 간추린 열성어제 열성어필(列聖御製 列聖御筆) 등이 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열성어필은 역대왕의 필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간행과정에서 어필의 선정(選定)과 모간(模刊)에 있어서도 신중하였으므로 조선시대 서적간행(書籍刊行)의 수준도 살필 수 있다.

왕조(王朝)였던 고려시대에도 어필에 대한 관념은 후대에 못지 않았으리라 보이나, 현재 고려시대의 진적(眞蹟) 어필은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필을 특정 장소에 봉안하였다는 기록도 없다. 단지 이러한 추측을 가능케 하는 기록으로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를 보면, “(정종(靖宗) 11年 ; 1045년 4월) 을유(乙酉)에 비서성(秘書成)에서 새로 간행된 예기정의(禮記正義) 70本과 모시정의(毛詩正義) 40本을

올리니, 각각 一本씩 어서각(御書閣)에 간직하고 나머지는 문신(文臣)에게 나눠주어라 명하였다”¹⁾, “(숙종원년 ; 1096년) 가을 7월 경인삭(庚寅朔)에 문덕전(文德殿)에 납시어 역대(歷代)로 비장(秘藏)된 문서(文書)를 열람하고 부질(部秩)이 완전한 것을 골라 문덕전(文德殿)·장령전(長齡殿)·어서방(御書房)·비서각(秘書閣)에 분장(分藏)하고 나머지는 우부(兩府)의 재신(宰臣) 및 고원(誥院)·사한(私翰)·내시(內侍)·문신(文臣)에게 차등있게 나눠 주었다”²⁾, “(숙종4년 ; 1099년 4월) 임진(壬辰)에 연영전(延英殿)으로 납시어 어장문서(御藏文書)를 검열(檢閱)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³⁾

위의 기록에 보이는 비서성은 축문(祝文)과 경적(經籍)을 맡아본 곳이고, 어서각은 궁내(宮內)의 도서(圖書)를 맡아본 왕실도서관(王室圖書館)격인 어서원(御書院)의 서각(書閣)이며, 문덕전은 고려초부터 경연(經筵)을 하던 곳이고⁴⁾, 장녕전은 소위 존각의 의미를 지닌 전각이라 하겠다.⁵⁾ 또한 연영전은 숙종년간에 개설된 기관으로 경적의 간행과 서적의 수집을 맡았으며 1136년(인종14)에 집현전(集賢殿)으로 개칭된 기관이다.⁶⁾ 이곳들이 바로 경연 및 경적의 간행을 맡고 역대 문한 서책(文翰 書冊)을 소장한 곳이라는 점에서, 역대의 어제나 어필 등도 소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후 경연(經筵)과 장서(藏書)를 맡은 관청은 보문각(寶文閣)이었는데,⁷⁾ 이곳에도 어필 등이 소장되었으리라 본다. 한편 “(예종 12년 ; 1117년 6월) 계해(癸亥)에 궁중에 천장각(天章閣)을 설치하여 송(宋)나라 황제(휘종(徽宗))가 사여(賜與)한 친제조서(親製詔書) 및 어필서화(御筆書畫)를 간직하도록 명하셨다”라는 기록을 통해,⁸⁾ 고려시대에도 역대왕들의 자취를 봉안한 특정의 전각이 있었다고 추측된다.

본고에서는 조선시대의 어필 중에서 역대 왕들의 어필 모각(模刻)하여 간행한 열성어필(列聖御筆)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필에는 진적(眞蹟) 외에도 각본(刻本) 현판(懸板) 금석문(金石文)의 종류가 있는데, 진적은 유일본(唯一本)이므로 각본(刻本)처럼 널리 보급할 수 없으며 시대가 올라갈수록 드물었으므로 어필을 길이 보존하는 방법은 모각이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조선시대에는 각 조대에 선왕의 어필을 존각에 봉안하던 과정을 통해 열성어필이 간행되었다는 점에서 역대어필의 진수(眞髓)를 살필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필의 수집과 보관, 열성어필의 간행실적, 봉안과 반사(頒賜), 현존하는 열성어필 판본의 개략적인 현황과, 그리고 열성어필의 간행의의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 1) 高麗史 卷6, 世家 卷第6 靖宗 11年 夏4月 乙酉條.
高麗史節要 卷4, 靖宗容惠大王 乙酉 11年 4月條.
- 2) 高麗史 卷11, 世家 卷第11 肅宗元年 秋7月 庚寅朔條.
高麗史節要 卷6, 肅宗明孝大王 丙子元年 秋7月條.
- 3) 高麗史 卷11, 世家 卷第11 肅宗4年 夏4月 壬辰條.
高麗史節要 卷6, 肅宗明孝大王 己卯4年 夏4月條
- 4) 이 곳은 1136년(인종14) 修文殿으로 개칭되었으며, 이후 여러번 바뀌다가 1369년 (공민왕 18) 확정되었다. 大學士·學士 등을 두고 문신중 博學한 자로 검직케 하였다.
- 5) 고려사 권11, 世家 권제11 예종1년 추7월 을미·계묘·갑진 ; 권13, 世家 권제13 예종 4년 추7월 무오조를 보면, 이곳에서 華嚴經 目蓮經을 강설하였다거나 선왕 肅宗의 명복을 위하여 孟蘭盆齋를 열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또한 고려사 권96 39b - 40a, 列傳 권제9 吳延寵조와 고려사절요 권7, 예종효문대왕 원년 3월조의 “長齡殿 校讐儒臣”이란 귀절로 보아 교정담당관이 있다는 점에서 왕의 명복을 빌고 소장된 도서를 관리하는 소위 존각의 기능을 띤다고 본다.
- 6) 고려사절요 권8, 예종효문대왕 정유12년 8월조.
고려사 권76 29a - 30, 志 권제30 百官 諸館殿學士조 ; 권16 43b, 世家 권제16 인종 16년 5월 경술조.
- 7) 1116년(예종 11) 궁궐에 淸讌閣을 짓고 學士·直學士·直閣 등 각 1인을 두어 조석으로 경서를 강론케 했다. 그러나 정연각이 궁중에 있었으므로 학사들의 숙직과 출입이 불편하다 하여 동년 11월 따로 보문각을 두어 정연학사를 옮겨 提學·同提學·管句·同管句 등을 두었다. 고려 예종 때에 설치된 소위 三閣(淸讌閣, 寶文閣, 天章閣)의 하나이다.
- 8) 고려사 권14, 世家 권제14 예종12년 6월 계해조.

2. 간행 경위(刊行 經緯)

1) 어필(御筆)의 수집(蒐集)과 보관(保管)

조선시대의 어필은 곳곳의 존각에 봉안되어 전래되었는데, 오랜 세월과 전란 등으로 인하여 많은 수가 망실·산일되었고 더욱이 임란이후에 와서는 임란이전의 어필진적은 매우 드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왕실과 사가(私家)에 흩어진 어필이 진헌(進獻)의 과정을 거쳐 수집되었는데, 특히 왕족이나 신하에게의 사여(賜與)과정을 통하여 민간에 흘러나간 어필이 진헌되는 사례가 자주 보인다.⁹⁾ 왕은 이들 어필을 진헌하는 자에게 제직(除職)·가자(加資)¹⁰⁾ 사물(賜物)¹¹⁾의 방법으로 치하하였으며, 그 중에는 지나친 제직(除職)·가자(加資)에 대해 대신들이 정식(定式)이 없는 처사임을 계(啓)할 정도로 역대어필에 대한 왕들의 태도는 매우 진중하였다.¹²⁾ 또한 사가(私家)에서 어필을 비롯한 명가들의 글씨를 간인(刊印)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어필이 민간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반대하는 기록도 보이며,¹³⁾ 더욱이 왕 자신들도 어필이 민간에 흘러 나가는 것을 꺼려 어필의 반사를 삼가는 예까지 보인다.¹⁴⁾

- 9) 성종실록 권166, 14년 11월 정사 : 권239, 경술21년 4월 기유조.
 명종실록 권13, 7년 12월 병자; 권19, 10년 윤11월 기묘조. 후자는 우참찬 申瑛의 성종어필 진헌기사인데 그 말미의 “先是 景福宮火 故先王御書盡燒 上欲見成廟御筆 求諸民間 於是申瑛 以此進獻”이란 註로 보아 1553년(명종8년) 경복궁 화재로 장녕전을 위시한 근정전 이북의 전각이 모두 소실되면서 성종어필이 모두 불타버렸음을 알 수 있다.
 선조실록 권122, 33년 2월 병술; 권169, 36년 12월 정해조.
 인조실록 권49, 26년 윤3월 임자; 권49, 26년 4월 신묘조.
 현종개수실록 권21, 10년 7월 임인조.
 숙종실록 권3, 원년 4월 기축; 권7, 4년 11월 무술; 권7, 4년 11월 을사; 권25, 19년 7월 정축; 권50상, 37년 3월 정해; 권58, 42년 11월 무진조.
 영조실록 권6, 원년 5월 무오; 권60, 20년 12월 정묘; 권64, 22년 7월 술오; 권91, 34년 2월 신유; 권122, 50년 3월 무신조.
 이들 진헌된 어필은 眞蹟 이외에도 私刊의 御筆을 진상하는 경우도 있다.
- 10) 단종실록 권144, 3년 4월 갑신·을유조.
 인조실록 권47, 26년 윤3월 임자; 권49, 26년 4월 신미조.
 현종개수실록 권10, 5년 3월 무진; 권21, 10년 7월 임인조.
 숙종실록 권7, 4년 11월 무술; 권50상, 37년 3월 정해; 권58, 42년 11월 무진조.
 경종실록 권4, 원년 7월 경자조.
 영조실록 권6, 원년 5월 무오; 권125, 51년 11월 임오조.
 정조실록 권1, 즉위년 6월 기해조.
- 11) 성종실록 권239, 21년 4월 기유조.
 명종실록 권13, 7년 12월 병자; 권19, 10년 윤11월 기묘조.
 선조실록 권122, 33년 2월 병술조.
 효종실록 권8, 3년 5월 을미조.
 현종개수실록 권10, 5년 3월 무진조.
 숙종실록 권7, 4년 11월 을사; 권25, 19년 7월 경축조.
 영조실록 권64, 22년 7월 무오; 권91, 34년 2월 신유; 권125, 51년 11월 임오조.
 賜物로는 馬·虎皮·鹿皮·豹皮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
- 12) 인조실록 권49, 26년 4월 임진조.
 숙종실록 권58, 42년 11월 무신조.
 더욱이 숙종19년(1693)에는 승정원에서 진헌자를 만나지 말 것을 밝히기까지 한다(숙종실록 권25, 19년 7월 정축조, “光平都正溟等 進宣廟孝廟顯廟御筆 上賜馬 政院引丁卯定式 啓請今後來呈御筆者 切勿析見封入 上充之”). 또한 영조 때에는 빈번한 어필진상에 따라 진헌자들이 干恩한다하여 단지 이들 어필을 模寫한 뒤 다시 出給하기도 한다(영조실록 권64, 22년 7월 무오조).
- 13) 성종실록 권166, 15년 5월 기축조, “上黨府阮君韓明澮 爲其孫景琦 請印法帖 仍進文宗御書及趙學士 眞筆 傳曰 文宗手書 不宜置於外間 予當藏之內部 法帖當令印賜 史臣 曰 明澮欲其孫學書法 請印法帖 其輕易煩瀆 已爲不當矣 且上所好著者書札 而又進法帖以中之 是豈大臣之道乎 明澮曾私印御書 使家家以爲屏簇 近侍爭之還收 蓋上之好尙明澮有以啓之也.”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조선시대 역대왕들의 필적은 엄숙한 봉안 의례를 거쳐 존각에 진장(珍藏)되었다. 이들 어필의 봉안(奉安)·소장처(所藏處)로서 국초에는 확실한 기록을 볼 수는 없지만 조선후기 정조 때에 이르르면, 역대왕들의 어제(御製)·어필(御筆)·어화(御畵)·고명(顧命)·유교(諭教)·선보(璿譜)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서 1776년(정조 즉위년) 궐내에 규장각이 설치되면서 확실한 봉안처가 정해진다. 규장각은 세조 때에도 일시 설치되었으나 폐지되었고 광해군 때에도 그 명칭이 나타나며, 1694년(숙종 20)에는 숙종이 친히 ‘규장각(奎章閣)’이라는 편액을 써서 종부사(宗簿寺)의 환장각(煥章閣)에 걸고 역대국왕의 어제 어필을 보관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조는 규장각을 창설한 뒤 영조를 비롯한 열조(列祖)의 어제 어필을 창덕궁 후원에 있던 열무정(闕武亭)을 봉모당(奉謨堂)으로 삼아 봉안하고, 본각(本閣)에는 정조의 어진(御眞)·어제(御製)·어필(御筆)·보책(寶冊)·인장(印章) 등을 봉안하였다.¹⁵⁾ 봉모당은 모훈(謨訓)의 자료를 봉장(奉藏)하던 으뜸가는 존각으로 그 명칭도 이러한 기능에서 붙여진 이름이다.¹⁶⁾

정조는 선왕(先王)의 어제(御製)를 침인(鍍印) 또는 담사(膽寫)하게 하고 보묵(寶墨)을 석각(石刻)하게 하여 열조(列祖)의 모훈(謨訓)과 함께 규장각에 동봉(同奉)한 바 있었으나, 뒤에 당저(當寧)의 어진(御眞)과 모훈(謨訓)을 봉안(奉安)하고 선왕(先王)을 비롯한 열성(列聖)의 그것은 봉모당을 창설하여 그곳으로 이전 봉안하였다. 당시 봉모당이 설치된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奉謨堂奉安御書總目 을 보면, 그 존각(尊閣)에 집적된 장서의 많은 부분을 영조의 신장(宸章)이 점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그 중에 권3을 대목(大目)만을 보면 다음과 같다.

御 製	英宗大王御製帖本	御筆木石刻版	木刻(七十七版)
廣進帖	英宗大王御製廣進		石刻(二十五版)
御 筆	成廟仁廟宣廟三聖御筆帖(當寧御筆跋)	御 書	英宗大王御書帖
	列聖御筆(二帖一套 又二帖)		英宗大王御書簇本
	宣廟御筆	御 押	列聖御押帖
	英宗御筆(玉刻二帖 木刻二帖)		孝章世署押花押帖
	英宗大王御筆帖本		王世子王世孫署押花押帖
	英宗大王御筆簇本		

14) 정중실록 권288, 25년 3월 계축조, “上 親書加減十三方 刊板于內 印三十餘本 賜議員宋欽等各一本 傳于承政院 曰 此方 欲頒于諸宰與承政院弘文館有老親者 然恐外間以予爲誇示筆跡 故不頒耳.”

15) 정조실록 권2, 즉위년 9월 기사조, “建奎章閣于昌德宮禁苑之北 …… 上卽阼 首命先祖編次人具允明·蔡濟恭等 開局 編英考御製 鍍于梓 模英考御墨 刻于石 又以御製之散在中外未及鍍梓者 設局膽寫 一本 奉藏于元陵之便房 一本 權安于大內別殿 召大臣教曰 我先大王宸章寶墨 皆教詔予小子之篇 所以尊信敬謹 豈尋常懷簡之比 宜建一閣 以追宋朝度奉之制 而列祖御製御筆之未及尊閣者 不必如宋朝之每朝異閣也同奉一閣 實爲省費祛繁之道 咨爾有司 其卽昌德宮之北苑而營度之 仍命棟宇丹□ 務從儉約 三月经始 至是工告完 初稱御製閣 後因肅廟御扁 名奎章閣 上樓下軒 後奉當寧御眞·御製·御筆·寶冊·印章 其扁肅廟墨也 又以宙合之扁 揭于南楹 卽當寧御墨也 西南曰奉謨堂 …… 奉列祖御製·御筆·御書·顧命·遺誥 及璿譜·世譜·寶鑑·狀誌 正南曰闕古觀 上下二層 又北折 爲皆有窩 藏華本圖籍 正西曰移安閣 爲御眞·御製·御筆移奉曝晒之所也 西北曰西庫 藏東本圖籍.”

봉모당의 개설시기와 위치에 대하여서는 千惠鳳, “藏書閣考-奉謨堂의 沿革 機能 및 그 藏書를 中心으로-,” 東 喬閣泰植博士古稀記念 儒教學論叢 (同년중간행위원회, 1972), pp.387-412 참조.

16) 謨訓이란 尙書 의 ‘大禹謨’와 ‘皋陶謨’와 같이 임금과 신하가 서로 논의한 것을 적은 글과 임금이 백성에게 訓諭한 것을 적은 글의 합성어이다. 奎章閣志 에서는 모훈의 종류로서 御製·御筆·御書·顧命·遺誥·密教 의 璿譜·世譜·寶鑑·誌狀 등을 포함하고 있다.

17) 奉謨堂奉安御書總目 3권 3책, 서울대 규장각도서. 주요내용은 권1에 譜牒·誌狀·遺教·大寶·御製, 권2에 御製, 권3에 御製·廣進帖·御筆·御書·御押으로 구성된다. 영조 이전 列聖의 奉安書 14부를 제외한 영조의 어제·갱진첩·어필 어화는 무려 5839部 5986冊에 달한다.

위 목록 중의 어필(御筆) 성묘인묘선묘삼성어필첩(成廟仁廟宣廟三聖御筆帖)의 말미에 표시된 “당우어필발(當宁御筆跋)”에 의하여 이 목록은 정조 때에 집적된 장서를 목록한 것으로서, 그 대부분이 영조의 것이라는 점에서 봉모당이 개설된 정조 초기의 저장(儲藏)으로 추정된다. 규장각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열성의 어필(御筆)·목각본(木刻本)·석각본(石刻本)·목판(木板)·옥축본(玉軸本) 등을 어수당(魚水堂) 후록하(後麓下)에 있는 진장각(珍藏閣)에 봉안해왔다. 이에 정조 초기에 규장각의 설치와 함께 봉모당이 마련되어 처음으로 영조의 어제 어필 등을 이봉(移奉)하게 되었던 것이며, 위의 봉모당봉안어서총목(奉謀堂奉安御書總目) 이 바로 그 때의 기록인 것이다. 그런데 영조의 어제 어필 등을 제외한 열성들의 어제 어필 등이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당시 봉모당이 설치된 후 초기의 봉안이라는 점에서 대표적인 열성의 어제·어필만을 봉안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후 정조 9년(1785) 10월의 기록을 보면, 앞의 총목에 비하여 봉모당으로 이안(移安)된 어필의 수량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봉안된 어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國初御筆印本 列聖御筆	50本	石	刻	41本
成廟朝御筆御押教旨	1本	木	刻	211本
先廟朝御筆	6本	木	刻	925片
仁穆聖后御筆	1本	文廟聖廟元廟宣廟御筆木板		725片
肅廟朝御筆	8本	仁廟朝會盟玉軸		1本
列祖御筆碑銘	20本			

그런데 당시의 봉모당은 정조 때에 이미 내부가 협소하여 열성(列聖)의 신한(宸翰)을 경열(敬閱)하기가 극히 어려웠고 장가(櫺架)도 개조하여 편법으로 분안(分安)하는 실태였으므로¹⁹⁾ 복본(複本)이나 왕실과 별로 관련이 없는 자료는 규장각의 다른 소속시설로 이관하였다.²⁰⁾ 이후 증가되는 장서를 수용하기 위해서 봉모당의 이전이 불가피하여, 마침내 철종 8년(1857)에는 창덕궁(昌德宮) 금호문내(金虎門內) 금문원(擒文院) 북쪽의 대유재(大酉齋)로 이견되었다. 이후 그 저장(儲藏)이 대폭 증가되어 융희4년(1910) 8월 22일 합병조약이 체결되기 직전의 저장은 전적류(典籍類) 8668책(冊), 족자류(簇子類) 507축(軸), 석각류(石刻類) 106점(點), 유물(遺物) 32점(點), 책보인신(冊寶印信) 68점(點)에 달하였다. 이 때의 봉장서목(奉藏書目)으로 장화각(藏畫閣)소장의 봉모당봉장서목(奉謨堂奉藏書目) 2책과 봉모당후고봉장서목(奉募堂後庫奉藏書目) 1책 및 봉모당책보인신목록(奉謨堂冊寶印信目錄) 1책에 그 상세한 내용이 전한다.²¹⁾

우선 봉모당봉장서목 제1책에는 열성의 어제(御製)·어필(御筆)·어화(御畵)·고명

18) 정조실록 권20, 9년 10월 을미조, “乙未 教曰 今因先朝御製筆碑本奉考事 先詣珍藏閣 敬閱列聖宸翰 此閣在魚水堂後麓下…… 閣中有天翰閣銘揭板本藏置者 攷其年條 在肅廟朝甲戌 是年建奎章閣於宗簿寺 御書扁額 將又建天翰閣 而今只有御製揭板本矣 …… 擇日奉揭於奉謨堂 因此得國初御筆印本 列聖御筆五十本…… 仁廟朝會盟玉軸一本 亦在於此閣 欠敬甚矣 亦爲移奉於奉謨堂.”

19) 정조실록 권20, 9년 10월 을미조, “本堂狹窄 所見極甚苟簡 改造櫺架 從便分安.”

20) 西庫藏書錄 ‘奉謨堂移來件’ 참조. 그 移管時期에 대해서는 卷末에 附記한 ‘當宁御製類’ 중 數種의 문헌이 1781~89년의 成書임을 확인할 수 있어 정조조 후기에 이관되었음을 알 수 있다(천혜봉, 앞의 논문, p.400f 참조).

21) 편찬시기는 奉謨堂奉藏書目 제1책 끝의 ‘奉謨堂閣外奉藏 御筆石刻本 小本目錄’ 중의 “大硯一坐” 아래의 摘要란에 “隆熙四年五月三日 送于御苑事務局”이란 기제와, 奉謨堂冊寶印信目錄 의 奉安處所란에 “隆熙四年七月日 整理成件”이란 당시의 墨書로 보아 이들 목록서들은 隆熙4년(1910) 7월경에 작성된 것으로 본다. 編纂處는 奉모당봉장서목 과 奉모당후고봉장서목 의 관심 아래마다 ‘宮內府’란 직인이 있어 宮內府 소속의 奎章閣 典謨課이었다고 본다. 융희2년(1908) 9월 25일부터 시행된 奎章閣分課規程에 의하면, 典謨·圖書·記錄·文事의 4개 과가 신설되었는데 그중 典謨課에서는 ①塔源譜牒과 敦寧譜牒의 編纂 脩正 및 保管에 관한 事項 ②列聖御製 御筆 御章 및 御眞의 圖寫 및 尙藏에 관한 事項 ③奉番 및 祭典參列 事項 등을 맡아 보았기 때문이다(韓末近代 法令資料集 卷VII, p.351f 「奎章閣分課規程」 참조).

(願命)·유고(遺誥)·훈유(訓諭)·선보(璿譜)·세보(世譜)·보감(寶鑑)·지장(誌狀)·휘휘(徽諱)·책보문(冊寶文)·비문(碑文)·만장(輓章)·인장(印章)·능전도형(陵殿圖形)·공신회맹(功臣會盟) 등 분류하지 않은 채 第1장(櫥) 第1-3層·제2장 제1-3층·제3장 제1-3층·합내(閣內)·합내홍케일좌내(閣內紅櫃一坐內)·합내장케일좌내(閣內長櫃一坐內)·남장(南櫥) 제1-3층·第1-3장(櫥) 상케자(上櫃子)·합내외봉장품(閣內外奉藏品)의 순서로 혼잡하게 봉장(奉藏)되었으며, 끝에 합외봉장(閣外奉藏) 어필석각본(御筆石刻本)(大本 및 小本) 목록이 있다. 본 서목에는 서책(書冊) 이외에도 어용(御用)의 일용물품 목록이 있으며, 끝부분의 석각본 목록에는 역대의 어필 석각본을 품류(品類)·수칭(數稱)·형질(形質)·적요(摘要)란으로 나누어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석각판의 수량과 함께 어필의 첫대목을 적고있어 현존하는 열성어필들의 첫대목과 대조할 수 좋은 자료가 된다.

어필에 대한 기록은 第1장(櫥) 第1層에 가장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제2장 제3층, 제3장 제1-3층, 합내홍케일좌, 합내장케일좌, 제2-3장 상케자, 합내외봉장품에도 다른 책자와 혼재되어 있다. 여기서 열성어필 등의 제명(題名)하에 3조(祖)이상 역대왕들의 어필을 모각(목각 또는 석각)한 첩(帖)이나 책(冊)을 추려내 보기로 한다. 이밖에 제1장 제1층에서 그 형질이 기재되지 않은 예와 합내홍케일좌내에 그 형질이 석판 목판이 아닌 남릉의 자단의(藍綾衣 紫緞衣)로 기재된 예들은 폭(幅)이란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진적으로 사료되지만 참고로 부기한다.

***第1장(櫥) 第1층(層)**

品 類	數 稱	形 質	內 面 摘 要
列聖御筆 태조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2첩	石板	建文參年生子女이하
列聖御筆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5첩	石板	春寒測測이하
列聖御筆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2책	木板	兩家各生子이하
列聖御筆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2책	木板	兩家各生子이하
列聖御筆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2책	木板	孝悌忠信이하
列聖御筆 肅宗二幅 英祖一幅 正祖六幅 純祖二幅	1첩		御甲冑改爲之 謹守 別雲 金持默 酌酒永明尉

***第2장(櫥) 第3層**

列聖御筆	2책	木板	兩家名生子
列聖御筆	1첩	木板	春寒測測

***합내홍케일좌내(閣內紅櫃一坐內)**

列聖御筆	1첩	藍綾衣	孝宗 顯宗 肅宗 二幅 二幅 三幅
列聖御筆	1첩	紫緞衣	成宗 仁祖 宣祖 七幅 四幅 五暴

봉모당봉장서목 제2책에는 영조어제첩본(英祖御製帖本) 第1~26함(函)의 목록과 영조어제간본(英祖御製刊本) 상하함(上下函)의 서목이 있다. 봉모당후고봉장서목에는 열성어제부(列聖御製部)·어제예제부(御製睿製部)·어제윤음부(御製綸音部)·열성어제어필부(列聖御製御筆部)(치제문부(致祭文附))·열성어필어화부(列聖御筆御畫部)·열성지장부(列聖誌狀部)·책보문부(冊寶文部)(열성휘호첩부(列聖徽號帖附))·어제갱운부(御製韻部)·능원묘표석탑본부(陵園墓表石榻本部)·기적비문부(紀蹟碑文部)(비명부(碑銘附))·악장문부(樂章文部)·만장문부(輓章文部)의 주제별로 나누어 봉장되어 있으며, 끝부분의 부록(附錄)에는 보감(寶鑑)·실록부(實錄部)·훈요류(訓要類)·의궤류(儀軌類)·능전지류(陵殿誌類)·도형류(圖形類) 등이 잡록되어 있고 추부록(追附錄)에는 명조(明朝)의 실록(實錄)·어필(御筆)·어화(御畫) 등이 실려 있다. 그중 열성어필어화부(列聖御畫御畫部)에는 열성어필 7종을 위시하여 선조 효종 영조 장조(莊祖) 정조 태황제(太皇帝)(고종) 등의 어필 목록이 있다.

그 중에서 7종의 열성어필은 모각(模刻) 목탁(墨搨)하여 장첩 장책(粧帖 裝冊)한 각본(刻本)으로 여겨지는데,²²⁾ 앞의 봉모당봉장서목 제1책에 기재된 석판·목판본과 조대(祖代)를 비교하면 이동(異同)이 없다. 이밖에 위 기록들과 동시에 규장각 전모과(典謨課)에서 작성한 보각봉장품서목(譜閣奉藏品書目)에도 열성어필첩이 보인다.²³⁾ 또한 정족산(鼎足山)·태백산(太白山)·오대산(五臺山)·적상산(赤裳山)의 사고(史庫)와 강도외각(江都外閣)에도 열성어필이 분안(分安)되었는데 그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²⁴⁾ 더욱이 봉모당 소장본은 열성어필의 주축이었으므로 조선왕조시대에 간행된 열성어필의 대부분을 포함하였다고 본다. 이들 기록들을 종합하여 열성어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題名	種類	形質	祖代	首頁文句
列成御筆	帖	石板	태조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建文參年生子女
列成御筆	帖	印版	문종 - 효종	?
列成御筆	帖	石板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春寒測測
列成御筆	帖	?	세조 - 현종	?
列成御筆	冊	?	선조 - 현종	?
列成御筆	冊	木板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孝悌忠信
列成御筆	冊	木板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兩家各生子
列成御筆	冊	木板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兩家各生子
列成御筆畫題	帖	紫緞衣	成宗七幅 仁祖四幅 宣祖五幅	
列成御筆	帖	藍綾衣	孝宗二幅 顯宗二幅 肅宗三幅	
列成御筆	帖	?	肅宗二幅 英祖一幅 正祖六幅 純祖二幅	御甲冑改爲之 謹守 別雲 金持默 酌酒永明尉

22) 列聖御筆/一帖/太祖至景宗」列聖御筆/一帖/太祖至景宗」列聖御筆/一帖/文宗至顯宗」列聖御筆/一帖/世祖至顯宗」列聖御筆/一冊/宣祖至顯宗」列聖御筆/一冊/宣祖至肅宗」列聖御筆/一冊/宣祖至景宗」의 7종이 있다. 「열성어필어화부」의 다른 항목의 摘要란에 “眞本”“印本”이란 기재가 있는데 열성어필의 적요란에는 아무런 기재는 없지만 의례 印本으로 여기므로 위와 같은 기재를 생각하였다고 본다.

23) 譜閣奉藏品書目 . “列聖御畫」印板/文宗至孝宗/二帖」全 印板/ 文宗至孝顯宗/一帖”

24) 一例로 五臺山史庫의 경우, 융희3년(1909) 10월 25일자 五臺山瑤源譜閣所奉冊子調査形止案 에 “列聖御筆一冊/緞衣」列聖御筆作帖一件/青紙衣/辛卯八月日添奉安”과 五臺山史閣所奉冊子調査形止案 六櫃에 “列聖御筆十冊」列聖御筆二冊 板刻」又三帖 板刻”이란 기재가 있다. 이밖에 江華 外奎章閣의 경우, 규장각 소장 江華府外奎章閣奉安冊寶譜略誌狀御製御筆及藏置書籍形止案 (정조 6·8·9·15·19년, 순조 14·28, 헌종 2·5·9, 철종 7·8년) 등을 보아도 대략 위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2) 간행 실적(刊行 實績)

조선시대에는 국가나 민간에 의해 중국과 우리나라 명필들의 글씨를 모각한 법첩(法帖)(학습용 글씨본)이 제작되었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왕희지(王羲之)·조맹부(趙孟頫)·문징명(文徵明) 등의 진적이나 판본(板本)(각첩(刻帖))이 들어왔고,²⁵⁾ 이들을 모각한 법첩이 널리 배포되었다.²⁶⁾ 또한 김생(金生)을 비롯한 우리나라 역대명필의 글씨를 모각하기도 하며, 우리나라 각처 사사(寺社)에 전하는 수많은 비명(碑銘)들을 모인(模印)하여 서법(書法)자료로 삼는 사례가 있었다.²⁷⁾ 이들 법첩을 간행하기 위하여 민간에 비장된 진적을 진상하는 자에게 후상(厚賞)한다는 유(諭)를 내리기도 하며, 진상자에게 내려진 지나친 제관사물(除官賜物)에 대해 사신(史臣)의 언론을 받기도 하였다.²⁸⁾

이러한 법첩은 조선시대 글씨수준을 제고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조선초에는 국가체제의 정비와 함께 국가 대사(大事)에 쓰이는 글씨의 정비도 주요한 사안이었기에 교서관(校書館)이나 승문원(承文院)의 사자관(寫字官) 등으로 하여금 해정(楷正)한 글씨를 배우도록 하였고,²⁹⁾ 서재(書才)를 육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법첩을 반사(頒賜)하거나 광포(廣布)하였던 것이다.³⁰⁾ 이들 법첩 글씨가 바로 국가고시의 표준서체(標準書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므로 국내에서의 간행은 자연스런 일이었다. 또한 왕이 친히 쓴 글을 모인(模印)하는 경우도 보이는데,³¹⁾ 이는 아마도 후에 각조대(各祖代)에서 선왕이 어필을 간행하게 되는 전조(前兆)가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중국에서 전래된 역대제왕(歷代帝王)이나 명현(名賢)들의 묵적(墨蹟)을 왕에게 진상하여 이를 모각하고 또는 제왕(帝王)과 후비(后妃)들의 감계시(鑑戒詩)를 서사(書寫) 진상(進上)하도록 하였는

-
- 25) 문종실록 권4, 즉위년 11월 경술조.
 단종실록 권5, 원년 2월 신축; 권11, 2년 4월 기해조.
 세조실록 권8, 3년 7월 정묘조.
 성종실록 권51, 6년 1월 기묘; 권169, 15년 8월 을해; 권238, 21년 3월 을묘; 권278, 24년 윤5월 신축조.
 선조실록 권132, 33년 12월 경오·신미조.
- 26) 문종실록 권4, 즉위년 11월 경술조.
 단종실록 권5, 원년 2월 신축조.
 세조실록 권8, 3년 7월 정묘; 권16, 5년 5월 신묘·6월 갑술조.
 중종실록 권51, 19년 6월 임술조.
- 국내간행의 법첩으로는 王羲之의 蘭亭叙·東方朔傳, 趙孟頫의 證道歌·眞草千字·東西銘·赤壁賦, 雪庵의 頭陀帖 등이 있다. 이밖에 조선시대에 간행된 각본에 대해서는 규장각 소장인 徐有榘 鏤板攷 7권 3책을 참조. 한편 이들 법첩은 외국사신에게도 贈與品으로서 그 역할도 했다(세조실록 권16, 5년 4월 을축; 권19, 6년 3월 갑신; 권27, 8년 1월 을사; 권31, 9년 윤7월 무인; 권33, 10년 5월 기묘; 권43, 13년 8월 정미·경술조, 성종실록 권5, 1년 5월 신축조).
- 27) 세종실록 권96, 24년 6월 정해조.
 중종실록 권51, 19년 6월 임술; 권55, 20년 10월 병술조.
- 28) 세조실록 권16, 5년 6월 갑술조.
 선조실록 권132, 33년 12월 경오조.
- 29) 세종실록 권68, 17년 4월 기유; 권83, 20년 11월 갑신; 권88, 22년 1월 계축조.
 성종실록 권160, 14년 11월 갑신조.
 숙종실록보필정오 권13상, 8년 4월 갑진조.
 영조실록 권60, 20년 12월 정묘조.
- 30) 세종실록 권52, 13년 6월 갑오조.
 세조실록 권2, 1년 10월 계해; 권8, 3년 7월 정묘; 권16, 5년 6월 갑술조.
 성종실록 권51, 6년 1월 기묘; 권160, 14년 11월 갑진조.
 중종실록 권7, 기사 4년 1월 임자조.
- 31) 성종실록 권161, 14년 12월 임신조, “上親寫蘭亭記 刻於大內而印之 承旨亦印數本.”

데,³²⁾ 이러한 사례가 조선시대에 열성어필첩을 간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선초(鮮初)이래 열조의 어필을 간행하던 곳은 교서관(校書館)(일명 교서감(校書監))이었다. 교서관은 1392년(태조 1)에 설치되어 세조 때 전교서(典校署)로 개칭되고 성종 때에(1484) 교서관으로 환원된 관서로 경적(經籍)의 인쇄(印刷)·반포(頒布) 및 향축(香祝)·인장전각(印章篆刻)을 담당하였는데³³⁾ 정조 때에 이르러 규장각 설치된 뒤 1728년(정조 6)에 그 기능이 이에 병합되었다. 이에 따라 봉모당금문원(奉謨堂摛文院) 등의 내각(內閣)에 대하여 교서관은 열조(列祖)의 어제·서적 등을 보관하던 강도외각(江都外閣)과 함께 규장각의 외각(外閣)을 구성하게 되면서 규장각에서의 경적(經籍)의 인쇄·반포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규장각의 기능과 조직에 대해서는 규장각지(奎章閣志)에 보이는데,³⁴⁾ 그중 모훈(謨訓)의 회□(會□회)·봉장(奉藏)·간인(刊印) 및 서적(書籍)의 장서(藏書)·편서(編書)·진서(進書)·쇄서(曬書)기능 등은 어필(御筆)의 수집(蒐輯)·선정(選定)·모각(模刻)·간인(刊印)·봉안(奉安)·포쇄(曝曬)의 업무를 포괄한다고 본다. 따라서 규장각 설치 이전의 교서관이나 정조 이후 규장각에서는 열성의 어제나 어필의 선사(繕寫)와 간행(刊行)에 있어 필요한 제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

열성어필(列聖御筆)의 모간(模刊)기사로서 최초의 예는 현종 3년(1662)의 기록이 있다.³⁵⁾ 그 내용은 영양군 헌(嶺陽君 僉) 등을 비롯한 종실(宗室)의 군(君)·정(正)·부정(副正)들이 열성의 어필을 간추려(裒集) 이를 모사판각(模寫板刻)하여 진상하자 왕이 가납(嘉納)하고는 각자에게 한 품계씩 가자(加資)하였다는 것이다. 이 열성어필은 석각본으로서 현재 몇본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사진2·3). 이후 숙종·경종·영조 연간에도 각각 선왕의 어필을 새기어 이를 현종 3년의 열성어필 초간본에 덧붙여 간행하였음이 문헌기록과 현존하는 열성어필 판본을 통하여 알 수 있으며(사진4·5·6), 또한 현존 판본 중에는 숙종연간에 선조·인조·효종·현종의 어필을 목각(木刻)하여 간행한 또다른 열성어필 판본을 볼 수 있는데 (사진 7·9), 이후 경종·영조 초년에 숙종과 경종의 어필을 추가하여 간행한 판본이 전한다(사진 10·11).³⁶⁾ 특기할 사항으로는 영조초년에 간행된 석각본에 태조의 어필을 앞부분에 추가된다(사진1).

32) 문종실록 권4, 즉위년 11월 경술조, “安平大君略 進歷代帝王名賢集古帖 王羲之眞行草三體 趙子昂眞草千字等 書法板本 命付校書館許人模印.”

성종실록 권212, 19년 윤1월 갑오조, “武靈君柳子光 進歷代名臣法帖 赴京時所購也.”

중종실록 권14, 6년 12월 경인조, “命揀能書文臣 書帝王可戒之詩于屏風以進.”

『중종실록 권15, 7년 4월 임오조, “傳于承院曰 歷代后妃鑑戒時序 其速令書屏以入.”

33) 經國大典 吏曹 京官職 正二品衙門 校書館조에 교서관의 기능과 인원구성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禮曹取才조에, “校書館官員 每月提調試以八分·大篆·小篆·上方篆等書 科次置簿 憑考殿最”란 기록이 있다.

34) 奎章閣志 2권 1책 참조. 그 기능은 크게 奉安 編次 書籍 教習 등으로 나뉜다. ①謨訓 御眞의 奉安, ②會□繕寫에 의한 奉藏과 刊印, ③書籍의 藏書 編書 進書 曬書, ④教習을 위한 抄啓 講製, 그리고 ⑤院規에 따른 宣敎 獻議 代撰 進箋 筭疏 奏啓 諭旨 등의 처리, 日曆의 작성 등이다. 職制는 提學 2명, 直提學 2명, 直閣 1명, 待敎 1명 모두 6명의 閣臣 아래 4명의 檢書官을 두어 각신을 도와 교정과 書寫를 맡았다. 이외 내각에는 寫字官 8명을 비롯한 雜職 35명과 史屬 70명을 배속시켰으며, 外閣에도 吏屬 20여명이 두었고 1779년에는 검서관을 새로이 두었다.

35) 현종실록 권5, 3년 2월 무오조, “命嶺陽君僉福寧君栴加昭德資 朗善君侯福昌君栴加崇憲 朗原正僉加正義 花昌副 正流海陽正□花善副正澆加明善 列聖御筆主幹摹刊賞典也.”

현종개수실록 권6, 임인3년 1월 임진조, “宗室嶺陽君僉等 裒集列聖御筆 摹刻以上 上嘉之 命各加一資 後因臺啓 主管者外 竝賜馬.”

36) 숙종초년에는 열성어필의 간행기사가 보이지 않으나 현종까지 실린 열성어필 간본이 석각·목각본 모두 전하고 있어 숙종연간에 간행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경종초년에는 숙종의 어필간본을 교서관에서 간행한 실적이 있어(경종실록 권4, 원년 7월 경자; 권13, 3년 11월 신묘조 참조), 이를 기존의 열성어필에 추가한 열성어필의 간행을 짐작케 한다. 영조 때에는 열성어필 刊本이 이뤄지며(영조실록 권8, 원년 11월 경자조), 정조 때에는 영조의 어필을 編進케 한 기사가 있으나(정조실록 권1, 즉위년 6월 기해조) 열성어필에 추가되지 않고 단독의 어필로 간행되었다(주17의 總目 참조). 현존하는 열성어필 판본에 대해서는 본고 뒷편의 4) 現存 板本の 概況 부분을 참조.

그러나 정조 이후로는 1대(代)의 어필을 간행한 예가 많기는 하였지만 열성어필 간행의 전통이 약화된 듯 기록이나 현존판본이 전하지 않는다. 이는 역대 왕들의 글을 모은 열성어제(列聖御製)가 인조 9년(1631) 최초 간행되어 고종 2년(1865)에 이르기까지 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간행된 예에 비하면 자못 아쉬운 점이 있다.³⁷⁾ 여하튼 열성어필의 간행은 아마도 종실(宗室)이 참여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종친부(宗親府)가 관계하였을 것으로 보이며,³⁸⁾ 간행기술적인 공정은 국초이래 경적(經籍)의 출간을 맡아보던 교서관(校書館)에서 담당하였다.³⁹⁾

3) 봉안(奉安)과 반사(頒賜)

왕정국가(王政國家)에서 선왕의 모훈을 봉장(奉藏)함은 존각(尊閣)의 으뜸가는 기능이자 의무였다. 봉장각(奉章閣)의 부대시설로서 봉모당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진장각(珍藏閣)에 봉안되었다는 기록을 앞서 보았는데, 봉안의 절차에 대한 기록이 규장각지(奎章閣志) 봉모훈조(奉謨訓條)에 나타나 있다.⁴⁰⁾ 규장각이 개설된 초기부터 정조는 친히 매년 맹춘(孟春)과 맹추(孟秋)에 왕세자와 더불어 연길(涓吉) 전배(展拜)하였고, 매월 망전(望前)과 망후(望後)에는 각신(閣臣)2명으로 하여금 봉심(奉審)케 하였는데, 봉심 전에 미리 ‘모일봉심(某日奉審)’을 사퇴고 봉심 후에도 ‘유무사(有無事)’를 사퇴토록 하였다. 또한 이들 모훈을 고계(考稽)하려는 자는 사관(史館)에서 실록을 고계하는 예(例)와 같이 반드시 각신2명과 함께 행례(行禮)토록 하였다. 이와 같이 모훈봉안은 최대의 존숭(尊崇)을 기하는 절차였으므로 이후 이를 전범(典範)으로 실행하였다. 특히 왕과 왕세자의 봉모당 전배의(展拜儀)는 중요한 궁중행사로서 의식절차가 명문화되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⁴¹⁾

- ① 전배일(展拜日) 지정된 시각에 당시 임직각신(任職閣臣)들이 조복(朝服)차림으로 봉모당 바깥에 나와 대기한다. 왕이 원유관(遠遊冠)과 강사포(絳紗袍)를 갖추고 가마에 올라 거동하면 왕세자도 같은 복장으로 뒤따른다.
- ② 왕이 당문(堂門)밖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리어 판위(版位)로 나가면 임직각신들도 제자리로 들어가며, 왕이 사배례(四拜禮)를 하면 왕세자 및 각신 이하 모두가 그와 같이 행한다.
- ③ 각신의 반수(班首)가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계문권장(啓門捲帳)한 후 제자리로 돌아오면 왕은 동쪽 계단, 왕세자는 서쪽계단으로 당내(堂內)에 들어가 봉심(奉審)한다. 왕이 제자리로 내려오면 왕세자는 따라가며, 각신 반수는 서쪽계단으로 올라가 강장(降帳)門하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 ④ 그런 뒤에 왕이 가마에 올라 환내(還內)하면 왕세자가 뒤따르며, 각신 이하도 물러간다.

이러한 의식에는 의례히 의장(儀仗)이 동원되어 절차에 따라 고취(鼓吹)를 진작(振作)하여 행사를 엄숙하게 진행시켰다. 한편 모훈을 봉안할 때의 봉서의(奉書儀)도 한말의

37) 列聖御製의 간행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는 金鐘權 解題, 列聖御製 (明文堂, 1983), pp.1-13 참조.
 38) 규장각소장의 列聖御筆刊進及景宗大王御筆屏風瞻錄 (영조 1년 1725년, 1책 56장)을 보면 열성어필의 刊進상황이 나타나 있는데, 그 편찬자가 종친부로 되어 있다.
 39) 경종실록 권4, 원년 7월 경자조를 보면, “密昌君檄等 疏進肅廟朝御筆刊本 請命藝閣印出 上答以省覽疎辭 繼觀先廟御筆 敬奉欽玩 追慕益切 卿等用力懋心 以爲永世之寶 其爲忠貞 余甚嘉尙焉 仍下備忘 茲命加資 令下校書館刊行”이란 기록을 통하여 교서관이 어필간행 업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40) 奎章閣志 卷1, 奉安第3 奉謨訓條.
 41) 奎章閣志 卷1, 奉安第3 奉謨訓 展拜儀條. 定禮冊 에 그 의식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융희말년까지 실행되었는데,⁴²⁾ 왕이 친행(親行)하는 봉서의는 다음과 같다.⁴³⁾

- ① 봉서일에 배진(陪進) 각신(閣臣)이 조복(朝服)차림으로 서함(書函)을 용정(龍亭)에 봉치(奉置)하고 의장의 고취를 앞세워 당전(堂前)의 악차(幄次)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으면, 왕과 왕세자가 전배의(展拜儀) 경우와 같은 차림으로 거동하여 악차 앞에 이르러 가마에서 내린다.
- ② 이때 용정(龍亭)이 지나가면 왕이 지영(祗迎)하고 왕세자 및 각신 이하도 그와 같이 행한다.
- ③ 용정(龍亭)이 계단에 이르면 각신 및 봉서관(奉書官)·안보관(安寶官)이 먼저 정한 위치에 나아가는데 각신 1명이 봉서관 2명을 인솔하여 서쪽계단으로 올라가 계문권장(啓門捲帳)하고, 서함을 받들어 입당(入堂)하여 안상(案上)에 안치한 다음 모두 제자리로 내려온다.
- ④ 왕이 판위(版位)로 나아가 서배례(西拜禮)하며 왕세자 및 각신 이하도 그와 같이 한다.
- ⑤ 이어 전보(典寶) 2명이 보인(寶印)을 안보안(安寶案) 옆으로 가지고 가면, 안보관(安寶官)·봉서관(奉書官)이 서쪽계단으로 올라가 봉서관은 안상(案上)에 권(卷)을 펴놓고 안보관이 보인을 꺼내어 권수(卷首)에 주인(朱印)한 다음 모두 내려와 제자리로 돌아온다.
- ⑥ 그런 뒤에 왕이 동쪽계단으로 당내(堂內)에 들어가고 이어 왕세자와 각신 이하는 서쪽 계단으로 올라가 두루 봉심(奉審)하고는 제자리로 내려온다. 왕이 먼저 사배례하면 왕세자 및 각신 이하도 그와 같이 한다.
- ⑦ 각신이 봉서관을 인솔하여 서쪽계단으로 입당(入堂)하여 권과(卷裹)를 감내(龕內)에 봉안하고 강장합문(降帳闔門)한 다음 판위(版位)에 이르러 봉서례(奉書禮)가 끝났음에 사퇴면, 왕이 가마에 올라 환내(還內)하고 왕세자가 뒤따르며 각신 이하도 물러간다.

이러한 봉심(奉審)·봉서의(奉書儀)를 통하여 열성의 모훈을 존각에 봉장한 후에도 그 보전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매년 일년씩 실시하였던 포쇄(曝曬) 또한 봉모당의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였다. 그 시기는 5월 단오후(端午後)로부터 7월초순(月初旬) 사이에 왕의 뜻을 묻고 각신이 택일(擇日)하여 거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의례히 정해진 의식이 거행되었다.⁴⁴⁾

- ① 쇄서일에 임직각신(任職閣臣) 이하가 평상복 차림으로 봉모당에 나가 사배례하고 서쪽 계단으로 당내에 올라 봉심한다.
- ② 직각(直閣) 대교(待敎)가 집사관(執事官)을 인솔하여 어제(御製) 어서(御書)는 용정(龍亭)에 선보(璿譜) 세보(世譜)는 채연(彩輦)에 각각 안치(安置)하여 봉출(奉出)한다.
- ③ 의장(儀仗)의 고취(鼓吹)를 앞세워 나가면 각신 이하는 그 뒤를 수행하며 이안각(移安閣)⁴⁵⁾까지 와서 그 곳에 포쇄한다.
- ④ 작업이 끝난 후 환봉(還奉)할 때에도 올 때와 같은 의식으로 행한다.

42) 철종실록 권9, 8년 5월 임자조. 순종실록 권2, 융희2년 9월 27일조.

43)奎章閣志 卷1, 奉安第3 奉謨訓 奉書儀條.

44) 위의 책, 卷1, 書籍第5 曬書條.

45) 이안각은 본시 書香閣이라 하였는데 謨訓의 移安曬書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漢京識略 卷1, 昌德宮書香閣條, p. 38).

쇄서시에 때로 봉안된 어필의 양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면 몇 권씩 나누어 돌아가면서 포쇄할 수 있으며, 봉모당의 협실(夾室)에 봉안된 어필 판본(御筆板本)은 각신이 각속(閣屬)을 인솔하여 들어가 건식(巾拭)한다⁴⁶⁾ 만일 왕이 직접 쇄서에 전패할 경우에는 보다 엄숙한 의식이 행해지며 포쇄할 때나 종료한 뒤에 임금이 음식과 술을 선사하는 선□의(宣□儀) 또는 선은의(宣醞儀)가 진행되기도 한다.⁴⁷⁾

이와 같이 봉모당의 열성모훈(列聖謨訓)의 봉장(奉藏)은 실로 국가적인 ‘지중지경지사(至重至敬之事)’로서 전배봉심(展拜奉審)을 비롯한 봉서(奉書)와 서(書)의 모든 의식이 엄숙하게 거행되었으므로, 어필도 이러한 의식 절차에 의해 봉모당에 봉안되었다. 이밖에도 어필이 봉장(奉藏)된 장소로는 선원전(璿源殿) 집상전(集祥殿)을 들 수 있으며,⁴⁸⁾ 또한 금문원(擒文院)·이안각(移安閣)·서고(西庫) 및 강도외각(江都外閣), 그리고 각처의 사고(史庫)에도 분장(分藏)되었다.⁴⁹⁾

한편 유일본(唯一本)인 진적 어필(眞蹟 御筆)은 봉모당을 중심으로 봉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각본 어필(刻本 御筆)일 경우 봉안된 장소와 수량에 대한 정식(定式)은 없지만 오늘날 전해오는 경로나 봉모당을 위시한 각전각(各殿閣)의 목록서(目錄書) 및 어필(御筆)에 쓰여진 봉안기(奉安記) 등을 보면 대략 어제와 봉안과 같았을 것으로 본다. 특히 규장각이 설치된 이후 어제의 경우 금문원(擒文院), 규장각(奎章閣) 대내(大內)에 각각 봉안되었으며 이밖에 사고(史庫) 등에 봉안되었음을 볼 때⁵⁰⁾ 어필의 경우도 이에 준하였다고 본다.

열성어필(列聖御筆)의 반사(頒賜)는 주로 공신록에 오른 자들이나 국가적 대사를 치루는데 공이 많았던 자들, 종친의 대사에 크게 활약하였던 왕실인사, 청의 사신들에게 분사되었으며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간혹 부연(赴燕)하는 사신들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기도 하였다. 규장각 설치 이전에는 아마도 왕명의 출납(出納)을 맡은 승정원(承政院)이 교서관에 보관된 열성의 어필 간본(刊本)을 인계받아 왕에게 올렸으리라 본다. 현존하는 열성어필로 사여된 예를 보면, 승정원 관원 중에서도 예방(禮房)의 사무를 분담하던 우승지(右承旨)가 작성한 내사기(內賜記)가 표지 안쪽에 쓰여 있어 이러한 사실을 확신시켜 준다.⁵¹⁾ 규장각 설치이후로 어진(御眞)·어제(御製)·선원보첩(璿源寶牒)·내부서적(內府書籍) 등에 관한 사무는 규장각 각신(閣臣)의 집무청사인 이문원에서 담당하였으므로 이후 도서의 출납 및 어제 어필의 봉안과 아울러 어필을 반사할 경우에도 이문원을 통해 실행되었다고 여겨진다.⁵²⁾

46) 曬書儀의 註에는, “堂內所奉御製御筆 卷帙浩繁 有難一時奉曬 限幾卷輸次曬 而卷數則 閣臣臨時稟旨 御筆板本 夾室所奉者 閣臣率閣屬 入就架前以巾拭之”란 내용이 있어 御筆板本이 봉모당 옆에 딸린 협실에 봉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47) 正禮冊, 奉謨堂展拜曬書儀條 참조.

48) 정조실록 권5, 2년 2월 기해조에는 皇朝의 列祖御筆御製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列聖御書 등을 선원전에 봉안한 기록이 있다. 주23의 書目 참조.

장서각 소장인 集祥殿奉在件記 (순조30년, 1830)에는, “太祖大王御筆二帖」世祖大王御製訓辭一卷」宣祖大王御筆二帖」列聖御筆二卷 又一帖」肅宗大王御筆一帖」英宗大王御筆五帖」又一卷」圖書簇子一軸」崇禎紀元後一百三年庚寅七」月初十日移奉于」奉謨堂”이란 기록이 있다.

49) 규장각 소장인 奎章閣書目 (奎11706 2책, 奎11670 3책), 擒文院奉安總錄 1책, 寶文閣冊目錄 1책, 西庫藏書錄 1책, 書香閣奉安總目 1책, 承華樓書目 1책, 春坊藏書目錄 1책 등에도 어필의 서목이 들어 있다. 그리고 봉안에 대해서는 주24의 形止案 참조.

50) 奎章閣志 권1, 編次第4 奉藏條, “御製奉安機 一在擒文院 一在奎章閣 一在大內 御製繕寫後 裝卷成帙裏以紅緞入直閣臣 涓吉稟旨 奉安如儀.” 同 권1, 編次第4 刊印條, “印書之後 奉安幾本(奎章閣及西庫五處史庫奉安之本) 進獻幾本 頒賜幾本 亦爲稟定.”

51) 본고의 4) 現存 板本の 概況 部分의 <표2> 藏書閣 所藏本 ②·③의 열성어필 內賜記 참조.

52) 奎章閣志 권1, 編次第4 刊印조를 보면, 御製 頒賜本의 경우 檢事官이 출납을 맡아 賜恩이 내려지면 閣臣의

4) 현존 판본(現存 板本)의 개황(概況)

오늘날 현존하는 열성어필의 수는 적지 않다. 그 대부분은 규장각(奎章閣)에 가장 많이 전하며, 봉모당(奉謨堂)과 적상산사고(赤裳山史庫)가 그 바탕을 이룬 장서각(藏書閣) 등에 전한다. 이밖에도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전하는 예들이 있으나 대략 규장각과 장서각 소장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두 곳의 소장본을 중심으로 열성어필의 중요사항을 정리하면 <표1·2>와 같다.

조선시대 최초로 현종3년(1662)에 간행된 열성어필의 모습을 전하는 열성어필첩이 서울대 규장각에 2본이 전한다. 그 말미(末尾)에는 당시 간행 주간자(主幹者)의 하나였던 낭선군 이오(朗善君 李侯)(1637-1693)의 자필 간기(自筆 刊記)가 있어 열성어필첩의 간행목적이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⁵³⁾

열성의 어필은 세대(世代)가 멀어지고 난(亂)을 겪으면서 다수가 산망(散亡)되었으니, 신(臣)이 삼가 보고 들은 바로써 구조(九朝)의 유묵(遺墨)을 수집하고 (이를) 들에 새겨 널리 배포하였습니다. 또 몇건을 탁인(拓印)하여 나라안 명산(名山)에 봉안하니 오래도록 전하고자 합니다.

황명(皇明) 승정기원후(崇禎紀元後) 계묘년(癸卯年)(1663) 중춘(仲春)에 낭선군(朗善君) 신(臣) 오(侯)가 머리숙여 삼가 씁니다.

이들 첩은 1663년 봄 사고 봉장용(史庫 奉藏用)으로 특별히 장첩(粧帖)한 것으로서, 한말에 규장각 도서로 편입된 태백산 또는 오대산사고에 봉장된 것이라 본다. 이후에 간행된 석각본 열성어필에는 적상산·태백산·오대산 사고에 봉장되었다는 장서기(藏書記)나 왕명으로 아무개에게 사여(賜與)한다는 내사기(內賜記)가 적힌 예가 각각의 전래 과정을 살필 수 있다(사진12, 표1·2).

한편 열성어필 간본(列聖御筆 刊本)은 대략 석각본과 목각본으로 대변된다. 석각의 경우 어필을 석판(石版)에 음각한 뒤 조대순(祖代順)으로 혈수(頁數)를 매기어 이를 장지(壯紙)에 묵탁(墨擲)하여 첩(帖)으로 장황(粧潢)하는데 이를 소위 선풍엽(旋風葉)이라 부른다. 각 시기마다 석각본 열성어필첩(列聖御筆帖)을 성첩하게 되는데 어필의 선택에 따라 혈수가 달라질 경우, 이전의 석판에 새긴 혈수를 메꾸고 다른 부분에 새로운 혈수를 새기었으므로 성첩의 전후를 살필 수 있다. 한편 목각의 경우는 일반 목각본의 경우와 같이 어필을 목판에 양각으로 침재(鍍梓)한 후 저지(楮紙)에 묵탁(墨擲)하여 이를 성책하게 되는데, 이는 소위 선장(線裝)의 형태로 되어 있어 기록에서는 책(冊)이나 권(卷)으로 나타나 있다. 혈수(頁數)는 양각된 자획(字劃)의 우측상단에 음각하여 표시하였음이 부분적으로 보인다. 이밖에 열성어필로서 진적을 장첩한 경우와 기존의 어필을 새긴 비문 등을 탁본하여 장첩한 예도 있다.⁵⁴⁾

이를 정리하면, 석각본(石刻本)은 음각(陰刻)(오금탁(烏金拓) 전묵법(填墨法)으로 정

서명을 받고 卷首에 寶印을 朱印한 다음, 在京諸臣은 이문원에서 직접 親受하고 在外諸臣은 閣史가 賚專하거나 騎撥로 下送한다는 기록이 있어, 대략 御筆刻本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였다고 본다.

53) 규장각 소장의 列聖御筆 (도서번호 奎10310, 10311) 帖末刊記, “列聖御筆 世遠經亂 致多散亡 臣謹以聞見 蒐輯 九朝遺墨 勒石廣布 且以印粧累件 奉安于國中名山 以壽其傳云 皇明崇禎紀元後癸卯仲春 朗善君臣侯拜手稽謹書。”

54) 기존의 비문을 탁본·장첩한 예로서 장서각소장본 ⑦과 규장각소장본 ⑧이 있는데, 정조가 四朝(숙종·영조·장헌세자·정조)가 지는 武安王廟碑를 東南兩廟에 세우고 이를 內閣으로 模寫陪進토록 한 것이다. (정조실록 권20, 9년11 신유조).

리) 첩장(帖粧)(선풍엽(旋風葉)), 장지(壯紙), 목각본(木刻本)은 양각(陽刻)(선시탁(蟬翅拓)) 선장(線裝)(卷 또는 冊)저지(楮紙)의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또한 각각의 내용이 다른데, 석각본의 경우 태조로 시작되는 첩의 첫귀절은 “건문삼년생자녀(建文參年生子女)…”, 문중으로 시작되는 첩의 첫귀절은 “춘한측측(春寒測測)…”이다(사진1·2). 목각본의 경우 선조(宣祖)로부터 시작되어 그 첫귀절이 “양가가생자(兩家各生子)…”와 “효제충신(孝悌忠信)…”의 두가지가 있는데, 수록된 어필의 내용은 다르지 않고 단지 순서가 뒤바뀌었을 뿐이며, 대부분 선조어필이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사진7·8).

<표1> 규장각(奎章閣) 소장본(所藏本)

NO	表題	刊行年代	祖代	書誌事項 (cm)	印章	備考	소장번호
①	列聖御筆	顯宗3年 (1662)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39.8×28.6 21折 石刻 旋風葉 壯紙	朝鮮總督府 圖書之印,京 城帝國大學 圖書章,서울 大學校圖書	刊記: …皇明宗崇禎紀元 後癸卯仲春朗善君 臣侯拜手稽謹書	규장각 10310 10311
②	列聖御筆	肅宗年間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42.4×30 24折 石刻 旋風葉 壯紙	"	.	규장각 10089 10325 가람古75 4.3-Y41p
③	列聖御筆	景宗3年頃 (1723)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2.4×28.6 32折 石刻 旋風葉 壯紙	"	藏書記: 10323-五臺山史庫 藏」上之三年癸卯 六月日」 10327-太白山史癸 卯庫藏」上之三年 癸卯六月日」	규장각 10323 10327
④	列聖御筆	英祖元年 (1725)	태조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42×29.7 52折 石刻 旋風葉 壯紙	"	.	규장각 9833-2-1 10322 10324 10326
⑤	李朝歷代 御筆拓本 帖	英祖元年 (1725)	"	40.6×26.3 51折 石刻 旋風葉 壯紙	서울大學校 圖書	表紙와 表題는 後 補	규장각 古 2410-1
⑥	列聖御筆	肅宗年間	선조 인조 효종 현종	43×29.6 78張 木刻 線裝 楮紙	①과 同	.	규장각 9824 9825
⑦	列聖御筆	景宗3年頃 (1723)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9×32.8 102張 木刻 線裝 楮紙	"	9828,9829는 100張	규장각 9826-32 9833-2-2
⑧	御製御筆 帖	正祖9年 (1785)	숙종 영조 莊獻世子정조	40.8×30 61張 拓本 線裝 壯紙	"	10086·7表題四朝 御製御筆東南關王 墓碑	규장각 10088 19986·7

<표2> 규장각(奎章閣) 소장본(所藏本)

NO	表題	刊行年代	祖代	書誌事項 (cm)	印章	備考	소장번호
①	列聖御筆	景宗3年頃 (1723)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2.5×28.9 32절 석각 선풍엽 장지	.	藏書記:赤裳山史 庫藏」上之三年癸 卯六月日」	장서각 3-498
②	列聖御筆	"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1.9×29.2 32절 석각 선풍엽 장지	宣賜之記	內賜記:雍正元年 四月二十六日」內 賜承政院同副承旨 」列聖御筆二件」 命除謝」恩」右承 旨臣申(手決)	장서각 3-755
③	列聖御筆	英祖元年 (1725)	태조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42.3×29.5 52절 석각 선풍엽 장지	宣賜之記, 呂東, 韓國精神 文化研究 院藏書印	內賜記:雍正三年 十月十一日」內賜 綾君昌櫛」列聖御 筆二件」命除謝」 恩」右承旨臣申(手決)	한국정신 문화연구 원도서관 대 C10c 69
④	列聖御筆 帖	大正12年 (1923)	태조 문종 세조 성종 인종 명종 선조 원종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30.8×22.3 51장 영인본 선장	尹錫昌印, 澹弓 韓國精神 文化研究 院藏書印	刊記:大正12年10 月11日,京城府茶 屋町12番地,大東 成文社發行」장 서각③ 규장각④ 의 影印本	한국정신 문화연구 원도서관 장 C10c 170
⑤	列聖御筆	景宗3年頃 (1723)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9×34.7 100장 목각 선장 저지	.	.	장서각 3-499
⑥	列聖御筆	"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47.8×32.5 100장 목각 선장 저지	.	.	장서각 3-754
⑦	列聖御筆 御筆	正祖9年 (1785)	숙종 영조 莊獻 世子 정조	40.5×28.8 50절 탁본 선장 장지	奎章之寶	.	장서각 3-497

3. 간행 의의(刊行 意義)

이상과 같이 선대왕(先代王)의 어필을 수집·간행하는 의례(儀禮)가 반복되면서 열성의 어필이 집적(集積)됨에 따라 조선왕조 17·18세기에 이르러 열성어필(列聖御筆)이 간행되는 개략적인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그 간행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교(儒敎)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왕정국가(王政國家)에 있어서 역대선왕(歷代先王)들의 위엄과 왕실의 존엄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간행목적이다. 더욱이 간행을 주관했던 자들이 왕실(王室)이었으며 실제적인 간행을 담당한 관서로는 경적(經籍)의 간행을 주관하던 교서관(校書館)을 중심으로 종친부(宗親府) 등의 기관이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열성어필은 왕실의 위엄을 높이는 목적으로 제작 편찬되었던 역대왕들의 팔고조도(八高祖圖)·어제(御製)·어진(御眞)·선원보(璿源譜) 등과 함께 왕실의 존귀한 유물의 하나로 여겨졌고, 엄격한 봉안의식(奉安儀式)과 철저한 관리에 전력이 기울여졌다. 또한 궐내(闕內)의 존각(尊閣)을 비롯하여 사고(史庫)에 봉안되었으며, 특별한 내사품의 기능도 하였다.

둘째 열성의 어필 중에서도 진본의 수집에 전력하여 일단 수집된 진본(眞本)은 민간에 유출되는 것을 엄격히 다스렸으므로, 일반인들은 어필의 진본을 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에 왕실에서는 열성어필을 석각 목각(石刻 木刻)으로 간행한 각본(刻本)을 만들어 내사 배포(內賜 配布) 등의 경로를 통해 일반인들도 어필을 접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어필의 내용이 훈유(訓諭)의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열성의 어필을 보고 배울 수 있는 학습서의 역할도 하였으므로 후대의 서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셋째 열성어필은 각본(刻本)의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미 조선초기부터 왕희지나 조맹부 등 중국 역대명서가들과 우리나라의 역대 명서가들의 글씨를 모각(摹刻)한 법첩(法帖)들이 국가나 민간에 의해서 간행되었던 전통이 있었다. 그런데 열성어필의 간행은 당대 가장 우수한 모각기술(摹刻技術)과 장첩(粧帖)·장책기술(裝冊技術) 및 정선된 재료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정성에 의해 간행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각본의 수준을 한층 제고시킨 점이 높이 평가된다.

넷째 열성어필에 실린 어필(御筆)은 후대 왕들의 표준서체(標準書體)의 역할을 하였고, 훗날 어필의 모습을 살피는 근거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열성어필의 표준(標準)서체를 널리 알림으로써 어필의 위조나 그의 판정에도 유용하였으리라 보이는데, 이는 국초에 어보(御寶)나 인신(印信) 위조(僞造) 사실이 많았던 결과 차후부터는 모훈 봉안時 열성의 인보(印譜)를 포함시켜 훗날의 전거(典據)로 삼았던 점에서도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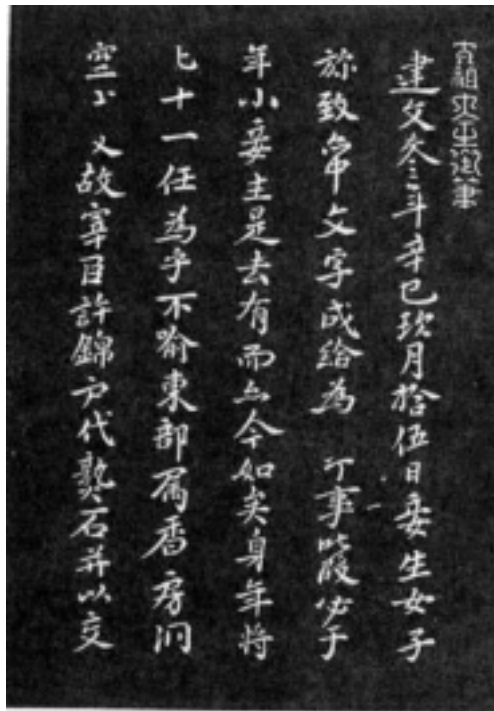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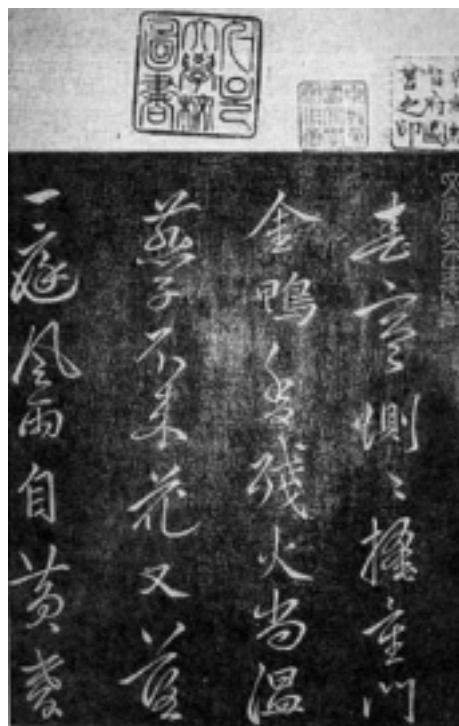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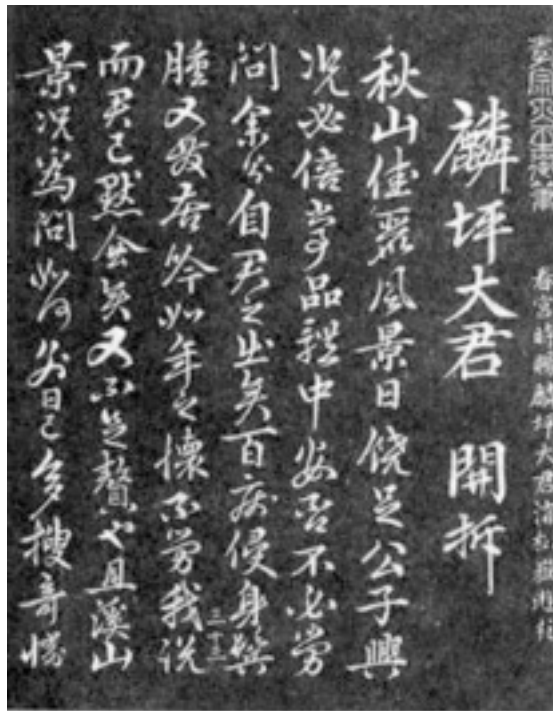
사진 1) 세조어필(精文研本 大-C 10c-69, 1면)

(사진1) 세조어필(정문연본(精文研本) 大-C 10c-69,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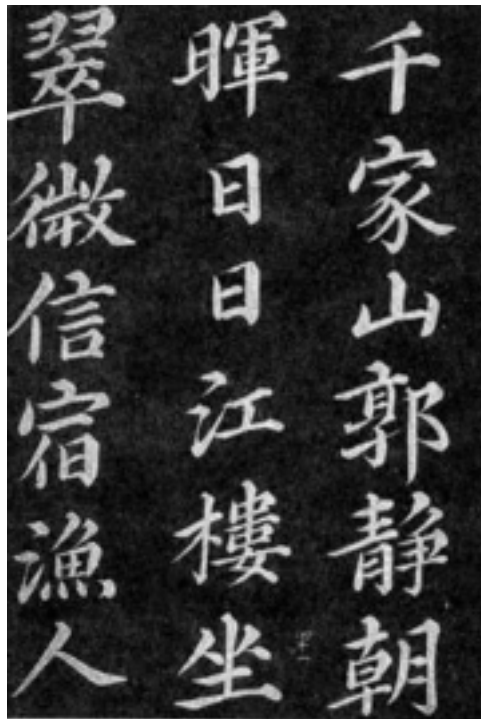
(사진 2) 문종어필(규장각본 10310, 1면)

(사진2)문종어필(규장각본10310, 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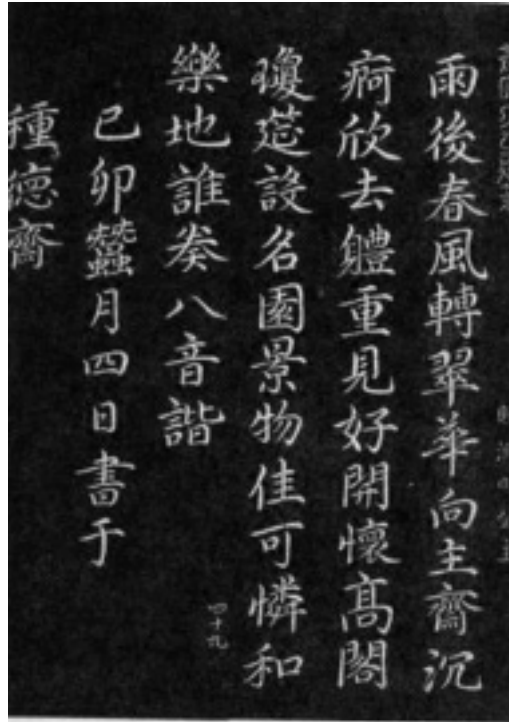
(사진 3) 효종어필(규장각본 10310, 33면)

(사진3) 효종어필(규장각본 10310, 33면)



(사진 4) 현종어필(규장각본 10089, 41면)

(사진4) 현종어필(규장각본 10089, 41면)



(사진 5) 숙종어필(장서각본 3-498, 49면)

(사진5) 숙종어필(장서각본 3-498, 4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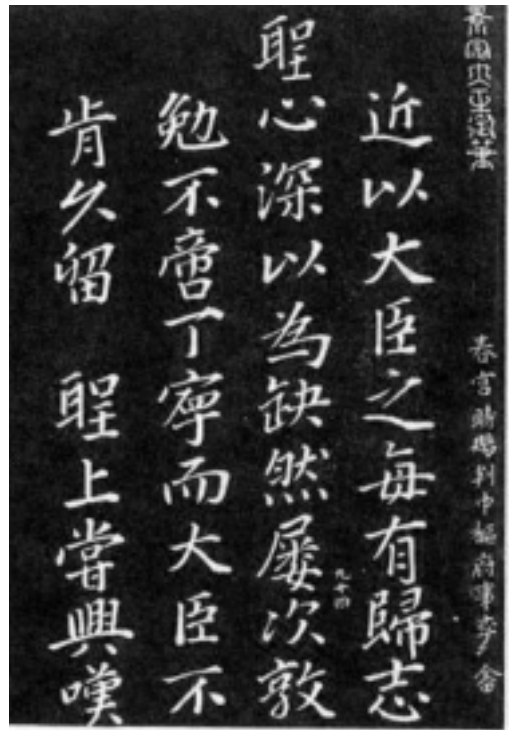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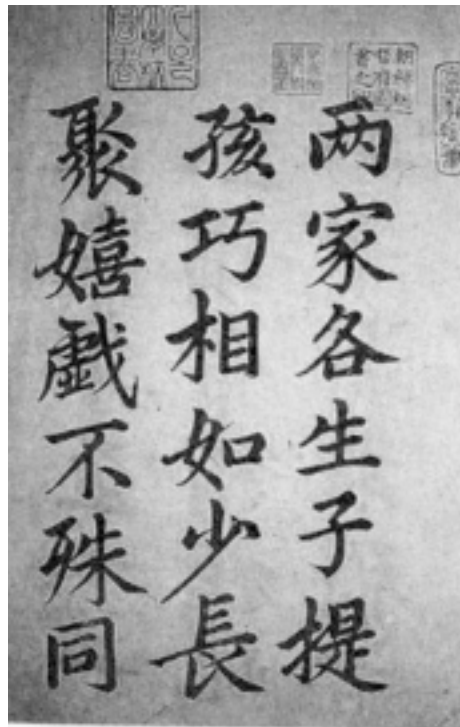
사진 6) 경종어필(精文研本 大-C 10c-69, 94면)

(사진6) 경종어필(정문연본(精文研本) 大-C10c-69, 94면)



(사진 7) 선조어필(규장각본 9824, 1a)

(사진7) 선조어필(규장각본 9824,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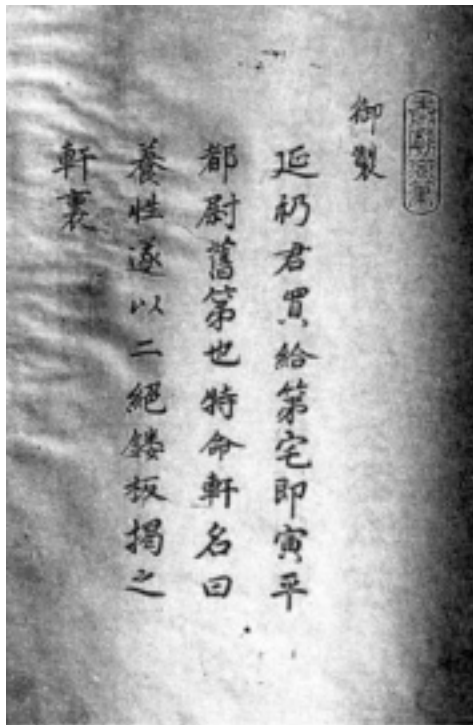
(사진 8) 선조어필(규장각본 9827, 1a)

(사진8) 선조어필(규장각본 9827, 1a)



(사진 9) 현종어필(규장각본 9824, 72a)

(사진9) 현종어필(규장각본 9824, 72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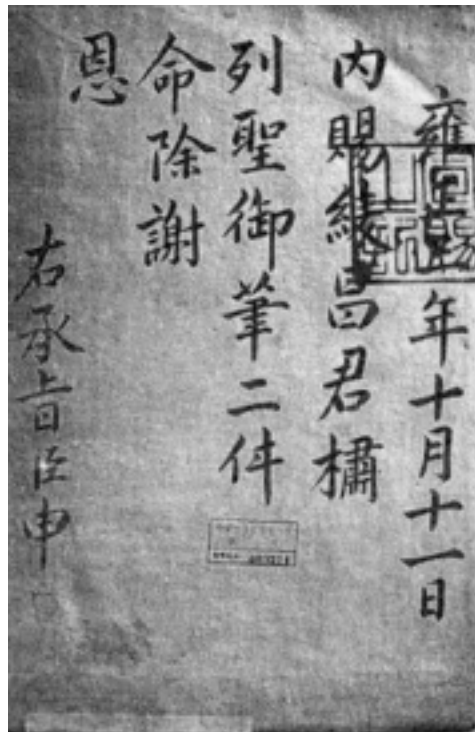
(사진 10) 숙종어필(장서각본 3-499, 79a)

(사진10) 숙종어필(장서각본 3-499, 79a)



(사진 11) 경종어필(규장각본 9829, 101a)

(사진11) 경종어필(규장각본 9829, 101a)



(사진 12) 內賜記(精文研本 大-C 10c-69,

(사진12) 내사기(內賜記) (정문연본(精文研本 大-C 10c-69, 표지안쪽면)